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611호

군포시 자치분권과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군포시 자치분권과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개요

임용예정 직 위	임용 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주요 업무 내용
자치분권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5호)	1명	2년	○ 주민자치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 주민참여예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 사회연대경제 및 마을공동체사업 ○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민관협치 ○ 소통정책 발굴 및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각종위원회 ○ 자원봉사센터 관리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2 법적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라.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3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자격요건

기준 구분		세 부 자 격 요 건
경력요건 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와 별표6 참고)
	공무원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근무경력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출 (고유번호증만으로 경력 인정 불가)
※ 관련분야 : 자치분권, 시민소통, 민관협치, 주민자치, 자원봉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며, 필수요건 및 임용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을 통해 검증

※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5 임용신분 및 보수

가. 임용신분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 승진 ·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약정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나. 보 수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개방형직위 5호)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임용분야	직 급	연봉상한액	연봉지급기준액 (연봉하한액)
자치분권과장	개방형 5호	93,801	53,316천원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11.16.(월) ~ 11.20.(금) / 5일간(주말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민원봉사실(1층) 5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10,000원)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 구입은 우체국에서 16:30까지 가능
- 우편봉투 겉면에 **'군포시 자치분권과장(개방형직위)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고, 우편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7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1.16.(월) ~ 11..20.(금)	12. 3.(목) 전·후	12. 9.(수)	12.16.(수)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8 제출서류 <단면 인쇄,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 - (서식1)

○ 응시수수료 : 군포시 수입증지(10,000원) 첨부

※ 군포시청 민원봉사실(1층) 5번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양식) - (서식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서식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서식4)

마.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서식5)

바.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서식6)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7)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서식8)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병역포함) 1부 - (서식9)

차.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상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①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②전일제의 경우 전일제 혹은 주40시간 명시

✔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기관의 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근무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서식10)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 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하거나 **인사 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타.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6개월이내 발행)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파.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하. 관련분야 수상,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 공고할 수 있음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나.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확인 바람.

다. 경력사항의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담당업무와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공무원연금법」 개정('18.9.21 시행)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제50조제1항

자.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임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 불가함.

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이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함. 단,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

카.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 390-0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직위(자치분권과장)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Ⅰ.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직급
경기도 군포시	자치분권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5호)

4. 주요업무내용	5. 비 중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지원	20%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10%
○ 마을공동체 활성화	10%
○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
○ 소통정책 발굴 및 운영	10%
○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20%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0%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필수 자격증 : [∨] 무, [] 유 ② 기타 필수요건 : [∨] 무, [] 유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1) 일반요건
	○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2) 자격증 요건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가능
	3) 공무원 경력요건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민간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5) 실적요건
	○ 공공기관에서 자치분권, 정책수립, 시민소통, 시민단체관리, 갈등조정 등에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 자치분권, 시민소통, 민관협치, 주민자치, 자원봉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 무, [] 유 ② 외국어 : [∨] 무, [] 유 ③ 정보화능력 : [∨] 무, [] 유 ④ 기타 특별요건 : [∨] 무, [] 유